

대구지방법원 2018. 4. 27 선고 2017가단20910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변론 종결2018. 3. 30.

판결 선고2018. 4. 27.

주 문

1. 원고에게,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는 3/13지분, 피고 C, D, E, F, G은 각 2/13지분에 관하여,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1999. 2. 11. 접수 제36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및 각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자백간주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이윤호

별지